

****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****

[계약의 목적]

표준 장기요양 이용계약서와 장기 요양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,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.

[계약 기간]

1.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~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
2.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.
단,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.
3.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.
4.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,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~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계약 종료일을 명시한 경우 기관과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수 있다.

[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]

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.

■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[2026년 1월 1일 적용]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 액(원)	구 분	금 액(원)
30분 이상	17,450	150분 이상	50,640
60분 이상	25,320	180분 이상	57,020
90분 이상	34,120	210분 이상	63,530
120분 이상	43,430	240분 이상	70,080

○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 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88,99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80,23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50,100

○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한다.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 - 월 한도액 초과분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액 청구한다.

○ 대상자 자격별 급여 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 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, 9%

② 그 밖의 이용 부담액
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수가의 100%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[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]

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,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.

가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1)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
- 2)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- 3)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4)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,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,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나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1)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- 2)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
- 3)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- 4)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

■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: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은 본 규정 제8조 이용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.

[계약의 해제]

1. 수급자(보호자)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가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나.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다.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(보호자)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
 - 라. 기타 수급자(보호자)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(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가.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나.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
 - 다.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- 라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- 마.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
- 바.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- 사. 3회 이상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- 아.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
 - 자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 - 차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 를 유보할 수 있다.
위의 계약 해제 사유 발생시 대상자(보호자)는 7일전에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대상자(보호자)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.
3. 수급자(보호자)는 제8조제3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‘센터’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.
4.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(또는 보호자)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